

# 지음 시그너스 인 동래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주택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5.27.이전부터 계속 거주)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05.27.(월)	2024.06.07.(금)	2024.06.10.(월)	2024.06.14.(금)	2024.06.20.(목)~ 2024.06.21.(금)	2024.06.25.(화)~ 2024.06.27.(목)

##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내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정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정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zi-um.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5.27.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5.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06.07.(금)	2024.06.10.(월)	2024.06.14.(금)	2024.06.20.(목)~ 2024.06.21.(금)	2024.06.25.(화)~ 2024.06.27.(목)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음 시그너스 인 동래” 1층 분양사무실 (주소:부산 동래구 온천동 1250-16번지) / ☎051-505-0486</li> </ul>		

※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정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람,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

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까지

II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동래구 건축과 - 22492호(2024.5.2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은천동 1250-16번지

■ 공급규모 : 지하1층 - 지상18층 1개동 공동주택 34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4000238	01	065.0400A	65A	65.0400	17.6500	82.6900	4.5100	87.2000	8.9700	17	17	0
	02	066.9800B	66B	66.9800	17.5300	84.5100	4.6500	89.1600	9.2500	17	17	0
합 계										34	34	0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1층 주출입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설비실, 경비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계약면적 등 합계면적은 소수점 이하 오차 발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아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배정합니다.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 기간 이내에 소명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청약 및 분양 계약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매수인은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을 매수인은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주택형 (약식표기)	해당 세대수	총 구분	대지비	건축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1차 계약금(호수지정시)	2차 계약금(계약시)	입주시 (계약후60일이내)
65A	1	2	75,764,925	304,235,075	380,000,000	3,000,000	35,000,000	342,000,000
	1	3	74,369,255	298,630,745	373,000,000	3,000,000	34,300,000	335,700,000
	1	4	74,568,636	299,431,364	374,000,000	3,000,000	34,400,000	336,600,000
	1	5	74,768,018	300,231,982	375,000,000	3,000,000	34,500,000	337,500,000
	1	6	74,967,399	301,032,601	376,000,000	3,000,000	34,600,000	338,400,000
	1	7	75,166,781	301,833,219	377,000,000	3,000,000	34,700,000	339,300,000
	1	8	75,366,162	302,633,838	378,000,000	3,000,000	34,800,000	340,200,000
	1	9	75,565,543	303,434,457	379,000,000	3,000,000	34,900,000	341,100,000
	1	10	75,764,925	304,235,075	380,000,000	3,000,000	35,000,000	342,000,000
	1	11	75,964,306	305,035,694	381,000,000	3,000,000	35,100,000	342,900,000
	1	12	76,163,688	305,836,312	382,000,000	3,000,000	35,200,000	343,800,000
	1	13	76,363,069	306,636,931	383,000,000	3,000,000	35,300,000	344,700,000
	1	14	76,562,450	307,437,550	384,000,000	3,000,000	35,400,000	345,600,000
	1	15	76,761,832	308,238,168	385,000,000	3,000,000	35,500,000	346,500,000
	1	16	76,961,213	309,038,787	386,000,000	3,000,000	35,600,000	347,400,000
	1	17	77,160,594	309,839,406	387,000,000	3,000,000	35,700,000	348,300,000
	1	18	77,359,976	310,640,024	388,000,000	3,000,000	35,800,000	349,200,000
	66B	1	2	79,895,812	318,104,188	398,000,000	3,000,000	36,800,000
1		3	76,884,663	306,115,337	383,000,000	3,000,000	35,300,000	344,700,000
1		4	77,085,407	306,914,593	384,000,000	3,000,000	35,400,000	345,600,000
1		5	77,286,150	307,713,850	385,000,000	3,000,000	35,500,000	346,500,000
1		6	77,486,893	308,513,107	386,000,000	3,000,000	35,600,000	347,400,000
1		7	77,687,636	309,312,364	387,000,000	3,000,000	35,700,000	348,300,000
1		8	77,888,380	310,111,620	388,000,000	3,000,000	35,800,000	349,200,000
1		9	78,089,123	310,910,877	389,000,000	3,000,000	35,900,000	350,100,000
1		10	78,289,866	311,710,134	390,000,000	3,000,000	36,000,000	351,000,000
1		11	78,490,609	312,509,391	391,000,000	3,000,000	36,100,000	351,900,000
1		12	78,691,353	313,308,647	392,000,000	3,000,000	36,200,000	352,800,000
1		13	78,892,096	314,107,904	393,000,000	3,000,000	36,300,000	353,700,000
1		14	79,092,839	314,907,161	394,000,000	3,000,000	36,400,000	354,600,000
1		15	79,293,582	315,706,418	395,000,000	3,000,000	36,500,000	355,500,000
1		16	79,494,326	316,505,674	396,000,000	3,000,000	36,600,000	356,400,000
1		17	79,695,069	317,304,931	397,000,000	3,000,000	36,700,000	357,300,000
1		18	79,895,812	318,104,188	398,000,000	3,000,000	36,800,000	358,200,000

- ※ 본 아파트는 사용승인 후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중도금은 없으며, 입주기간 내 잔금을 납부 하여야 하므로 청약전 본인의 대출가능여부,대출한도,자금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개인별 대출한도·대출불가,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매수인은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 2차 계약금은 호수지정 후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7일이 초과한 경우 연체료가 부과되며 일정 기간 최고한 후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 잔금 미납시 입주기간 종료일 이후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될 수 있으며,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 본 주택은 2024.07월 입주예정인 주택으로 확장형 발코니 및 LG유리난간,시스템 에어컨, 파세코 세라믹 글라스 상판은 기시공 되어 무상 제공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거실, 침실 2곳 설치, 거실LG유리난간, 주방 빌트인 삼성오븐 포함)
- ※ 기시공된 확장형 발코니 및 유리난간, 시스템 에어컨에 대하여 변경 등 일체의 추가공사를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I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b></p> <table border="1" data-bbox="313 1169 2112 1337">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li> </ul>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ul> </li> </ul>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이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li> <li>-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li> </ul>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li> </ul>												
<p><b>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b></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b>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b></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b>②무주택자 우선공급</b>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단계</th> <th style="width: 35%;">비율</th> <th style="width: 50%;">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b>③청약통장 가입기간</b>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li> </ul>													
<p><b>비고</b></p>	<p>■ <b>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li> <li>-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구 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일 정	2024.06.07.(금)	2024.06.10.(월)	2024.06.14.(금)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C·모바일) 청약홈</li> </ul>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b>인감증명 방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본인서명확인 방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p>※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p> <p>※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p> <p>※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p> <p>※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p> <p>■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p>-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p> <p>-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p>
공고단지 청약연습	<p>-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p>-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p> <p>-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p>
당첨자발표 서비스	<p><b>청약홈</b></p> <p>-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p> <p>- 조회기간 : 2024.06.14.(금) ~ 2024.06.23(일) (10일간)</p> <p>-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p> <p>-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p> <p>-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p>
	<p><b>문자</b></p> <p>- 제공일시 : 2024.06.14.(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p> <p>-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p> <p>-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 V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아래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는 본 주택 1층 분양사무실로 기간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체결일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 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
- 서류미제출로 자격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간주 합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대상자 포함)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분양사무실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미소명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되며, 서류미제출로 인해 미확인시 계약포기로 간주 하여 당첨자로 분류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사전 서류 제출기간	서류 제출 장소
당첨자 서류 제출(일반 공급 및 예비입주자 포함) ※예비입주자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024.06.20.(목)~2024.06.21.(금) (10 :00 ~ 17 :00 )	시그너스 인 동래 1층 분양사무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1250-16번지)

■ 일반공급(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 제출기간 내 접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 공급 (예비 입주자 포함)	○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본인	• 분양사무실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본인	• 본인 직접 신청 시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용도: 주택공급신청용(인감증명서 본인발급용)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인 발급 기준 참조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 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자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 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 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 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li> <li>• 계약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li> <li>•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비속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li> <li>※ 출입국기록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li> <li>•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li> </ul> </li> <li>•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li> <li>-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및 직계 존비속	
		○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입주자 저촉에 가입하고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li> <li>※ 군 복무기간(10년이상) 명시</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 대장등본 (가옥대장등본 포함)</li> <li>• 무허가 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li> <li>•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포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li> <li>• 멸실·철거예정 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등</li> <li>•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li> </ul>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li> </ul>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에는 제출생략
	○	위임장	당첨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도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가정제 청약자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정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자격확인 &gt; 청약통장 &gt; 순위확인서 발급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gt;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li> </ul>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정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 조회</li> </ul>

- ※ 상기 모든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의 발급시 “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등일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Ⅶ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p>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p> <p>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p> <p>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p> <p>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p> <p>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p> <p>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p> <p>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p>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p>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p> <p>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p> <p>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p> <p>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p> <p>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p> <p>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p> <p>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p> <p>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p> <p>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p> <p>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p> <p>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p> <p>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p> <p>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p> <p>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p> <p>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p> <p>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p>

###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당첨자는 당첨 동 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 계약금 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서류 제출 장소	문의전화
당첨자 계약체결	2024.06.25.(화)~2024.06.27.(목) (10 :00 ~ 16 :00 )	시그너스 인 동래 1층 분양사무실 (부산 동래구 온천동 1250-16번지)	051-505-0486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분양사무소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방법

항목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분양대금 납부 계좌	새마을금고	9002-1987-9045-4	코리아신탁(주)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고, 사업주체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분양사무실에 계약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양사무실에서 현금수납 등 불가, 무통장 입금예시 : 401호 계약자 →‘401홍길동’)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과 관련한 납부계좌는 상기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는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받으며 계약자가 현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분양사무실에서 현장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 바람.)
- ※ 사업주체는 상기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에 변동이 있을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잔여 분양대금은 변경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만일 계약자의 계약서상의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서면(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 만일, 분양대금을 과오납 할 경우, 사업주체로 환불신청서(사업주체 양식) 및 구비서류(입금확인증, 통장사본, 신분증 등)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환불 예정이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 계약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 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 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시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고,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로 관리되어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분양사무실 인근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분양사무실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 도면에 준함을 매수인은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외국인 포함)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일(2020.10.27.)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부하거나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계약에 필요한 인지세 미납부시 권리의무 승계 및 소유권이전에 불이익이 있으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준합니다.

■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분양사무실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 (분양사무실 비치)' 작성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예비 입주자 추첨 및 계약안내**

예비입주자의 사전서류 검수일정, 호수추첨, 계약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통지 받은 예비입주자는 호수 추첨 및 계약일시에 불참 등으로 발생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계약시 (배우자도 대리인에 포함)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	※ 인지세를 시행위탁자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	당첨유형별 자격검증서류	해당자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위임장	-	분양사무실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주택공급계약용)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만 인정하며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아파트 계약용으로는 사용 불가합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 대출 안내**

- 사업주체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을 알선 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도금은 없으며, 계약서 작성 후 3개월이내 잔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매수인은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시행위탁자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s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1억초과~ 10억원이하: 1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s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http://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X 무상제공 품목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 오븐)**

**■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오븐 무상제공품목**

구분	해당타입	시공위치	비고
발코니 확장형	전타입	발코니	-
시스템 에어컨	전타입	거실 및 침실2개	-
빌트인 오븐	A,B TYPE	주방	-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입주자의 생활 편의 및 실제 사용면적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발코니를 일괄 확장공사 완료 후 공급하는 주택이므로 발코니 확장공사비 및 시스템에어컨공사비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품목입니다.

**■ 무상제공품목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모든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 세대로 시공완료 하였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축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 및 벽면에 환기시스템 및 시스템에어컨 의 덕트, 냉매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새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발코니 출입용 분함문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됩니다.
- 기시공된 확장형 발코니 및 시스템 에어컨, 오븐에 대하여 변경 등 일체의 추가공사를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리모컨은 시스템에어컨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X 단지 여건 등**

※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p><b>일반 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건물은 2023년 10월 준공된 주택입니다. 단지주변 현황,인접지역 현황,도로현황,배정학교 등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내외부 시설물의 추가적인 설치, 변경등 일체의 추가공사 없이 시공된 현상태 그대로 분양합니다.</li> <li>•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하여 현장 개방을 진행할 예정이며 입주 개시 이전에는 개방 기간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li> <li>• 일부 세대는 현장 개방 기간 내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샘플하우스로 사용되며 해당 세대의 계약자에게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li> <li>• 샘플하우스에 전시된 용품(인테리어 소품가구,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 및 표시물 등을 제거, 원상복구하여 공급합니다. 해당 세대는 원상복구에 일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 시점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li> <li>•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li> <li>• 각종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공급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li> <li>• 각종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주상복합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주상복합의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매수인은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li> <li>• 본 주상복합은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을 준수함을 매수인은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li> <li>•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li> </ul>
<p><b>공통</b></p> <p><b>인허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홍보물은 2022년 10월 사업시행(변경)인가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되었습니다.</li> <li>•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2021년 09월 14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li> <li>•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li> </ul>
<p><b>건물 주변 현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휀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li> <li>•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외부의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은 현재 상황 및 설치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공사의 범위가 아닙니다.</li> <li>• 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또는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분묘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li> <li>•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li> <li>•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및 기반시설 등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예정이며, 기부채납은 준공이후에 이루어지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공공하수시설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li> <li>• 본 주택은 (주)지음종합건설과 (주)익수종합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사업장이나 전체 시공 및 입주 후 하자보수는 (주)지음종합건설 또는 시행위탁자 (주)지음이 책임질 예정입니다.</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등학교는 현 통학교인 금강초등학교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중학교는 군내 (사직중,온천중,여명중,내성중 등)에 추첨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고등학교의 일반고 학군 학생 배정방법은 부산시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생배정방법을 따릅니다.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동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층은 주변 건물 및 구조물,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TYPE별 이사 시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주행 차량 또는 보행자로 인해 생활권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경비실은 1층 주출입구에 설치됩니다.</li> </ul>
단지	단지 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주택은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외부 도로, 내부 차로, 조경시설(수공간 등), 자전거 보관소,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빛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주차장 출입구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은 불가합니다.</li> <li>• 단지 내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ul>
	외관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측면에는 금속마감 및 조명이 설치됩니다.</li> <li>•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타사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및 로고(BI)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공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li> </ul>

		<p>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주택은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른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 지하층 및 1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공조시스템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li> <li>•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주상복합으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공용부위 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제연휨룸,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기계실, 휨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ul>
	<b>공용 설비 및 시스템</b>	
	<b>주차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장은 총 71대(장애인주차 포함) 타워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본 주택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음을 매수인은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li> <li>• 주요 방범 및 방재활동 영역에 보안등과 CCTV가 설치될 예정이나,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수량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b>평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주택은 2023년 10월 준공되어 평면의 변경 등 일체의 추가공사 없이 시공된 현 상태로 분양합니다.</li> <li>• 본 주택은 세대의 천장 높이는 2,350mm로 시공됩니다.</li> <li>• 입주 시 세대내에 침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li> <li>•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li> <li>•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부계획(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의 색상, 패턴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 침실사이즈는 안목치수 기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주상복합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li> </ul>
<b>단위 세대</b>	<b>발코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주택은 2023년 10월 준공되었으며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기시공되어 발코니에 대하여 변경 및 추가공사를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코니 외부 축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여 피난공간의 칸막이벽 및 도어의 철거 등 임의의 변경은 불가하고, 피난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적재물 등의 보관이 불가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 및 벽면에 환기시스템 및 시스템에어컨 의 덕트, 냉매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새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됩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li> <li>• 발코니 출입문 분함문 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됩니다.</li> </ul>
	<b>창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창호는 별도의 철재난간이 없는 일체형 타입 혹은 유리난간 타입으로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li> <li>• 유리난간이 적용된 외부창호를 통한 이삿짐 운반 시 유리난간의 파손우려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불가합니다.</li> </ul>
	<b>가구 및 마감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주택은 2023년 10월 준공되었으며 가구 및 마감재는 기시공 되어 추가설치, 변경 등 일체의 추가공사 없이 시공된 현 상태로 분양합니다.</li> <li>•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자재 특성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습니다.</li> <li>•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li> <li>• 냉장고장은 냉장고(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창호, 시트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Staple Tacker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시 온도 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적용되는 포셀린 및 도기질 타일은 대형타일 및 재료적 특성상 인접타일과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차이, 줄눈 두께 상이,자연무늬(베인 등)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li> <li>• 침실과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제공됩니다.</li> <li>• 일부 세대는 조망확보를 위하여 아트월이 안방(침실1) 맞은편 벽면에 시공 되었습니다.</li> </ul>
전기 기계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li> <li>•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가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li> <li>•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침실용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제어 됩니다.</li> <li>• 본 주상복합은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li> <li>• 보일러 가동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보일러는 적절한 용량을 선정하였으나, 온수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온수 사용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li> </ul>

**XI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사용검사 완료 후 분양하는 주택이므로 해당없음.
- **입주예정일 : 2024년 07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 추후 통보)**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은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어 입주예정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부대시설 : 주차대수 71대(기계식 68대, 자주식 3대), 자전거 15대, 관리사무소**
- **입주자 사전점검**
  -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공동시설공사, 가시시설공사, 가구주방공사, 유리공사, 돌.타일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잡공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함.
  - 건설교통부 입주자 사전점검 요령에 의거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사전점검일은 개별 통보할 예정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6조 규정에 의합니다.**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주상복합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분	내진능력(MIMI 등급)
등급	0.207g VII-7등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상 1층 진입 및 주행로 유효높이는 3.25m이며, 주차 타워 진입 높이는 1.9m입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소방감리	전기, 통신 감리
회사명	(주)희 건축사사무소	(주)한국나이스기술단	금정엔지니어링(주)
금액	610,000,000	13,000,000	7,500,000
연락처	051-462-3398	051-557-4225	051-469-3119

■ 사업주체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10층) 코리아신타(주) (등록번호 : 215-86-52007)

■ 시 공 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42, 202호 (광안동, 광안지음주상복합) (주)지음종합건설 (등록번호 : 222-86-00166)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430 (주)익수종합건설 (등록번호 : 621-81-43178)

■ 시행위탁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42, 201호 (광안동, 광안지음주상복합) (주)지음 (등록번호 : 617-86-19107)

■ 관리형토지신타 관련 주요 사항

-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시행위탁자 (주)지음과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타(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타 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하는 신타)에 따라 코리아신타(주)가 공급하는 것으로서, 코리아신타(주)는 관리형토지신타 계약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위탁자 (주)지음을 매수인은 인지하여야 합니다.
- 매도인 겸 시행수탁자 코리아신타(주)은 위탁자 (주)지음으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타 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타재산 및 신타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계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위탁자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지음이 부담합니다.
-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타 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을”(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코리아신타(주)가 분양계약 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위탁자 (주)지음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매수인은 인지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에 대한 일체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자 (주)지음 또는 시공사 (주)지음종합건설에게 있음을 매수인은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코리아신타(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는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매수인 “을”은 반드시 코리아신타(주) 명의 분양수입금계좌(해당 세대 가상계좌 포함)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위탁자 (주)지음 또는 매수인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코리아신타(주)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주)지음과 매수인(“을”)간에 또는 시공사 (주)지음종합건설, (주)익수종합건설과 매수인(“을”)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코리아신타(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습니다.

- 상기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주요 사항'의 내용은, 본 공고 및 공급계약서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분양사무실**

- 지음 시그너스 인 동래 상가 1층 분양사무실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1250-16번지)

■ **분양 문의** : 051-505-0486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